

#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. 9. 23.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### 1. 결정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### 2. 위 치

-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67-7번지 일원

### 3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-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1	주차장	중구 덕교동 667-7번지 일원	4,737	감)4,737	-	중구고시 제2017-130호 (2017.9.11.)	

-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1	주차장	· 주차장 폐지 (면적: 감4,737㎡)	· 충분한 주차시설 공급현황 및 사업부지 현황 반영,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수요 분산 등 주변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함.

### 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-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